

2025년 울산광역시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동차업종]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23.

울 산 광 역 시 장

1. 용자규모 : 자동차업종 100억 원(잔액분)

- ※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동차업종 100억 원 중 잔액분에 대해 연장접수
- ※ 은행협조 용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구분	자금용도	세부내용
경영안정 자금	기업 경영활동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시설자금 포함)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한 가능

※ 정책자금 : 온렌딩, 한국은행(C1, C2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보증연계자금 등

3.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자동차 분야)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업종 **【참고 1, p.6 ~ p.12】**

- ▶ 자동차업종 : 사내협력사 및 부품공급업 限

○ 지원 제외대상 **【참고 2, p.13】**

-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육성)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울산광역시 육성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신청일 현재 시 육성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업체
- ▶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시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제한**
-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 건설업 제외(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은 지원가능)

4. 용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액 산정,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5. 대출조건 : 2~4년간 기업체 선택

- 2년거치 일시상환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시는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 지원

6. 지원내용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0%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
(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구 분	2년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1회 용자 신청업체	2.5%	2.5%	1.7%
2~3회 용자 신청업체	2.0%	2.0%	1.45%
4회 이상 용자 신청업체	1.5%	1.5%	1.2%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대상

- ▶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 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지정서 구비)
-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
- ▶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인증서 구비)
- ▶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승인증서 구비)

-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 최대 1.2%
-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대상 /
울산광역시-기업은행 협약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7. 지원결정 취소대상 (매년 반기별 자금사용처 조사실시)

- 지원결정 후 폐업·관외이전·최종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금의 부정사용 확인,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자금환수 및 향후 3년간 市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용 제한

8. 신청서 접수

- 추가 신청기간 : 2025. 9. 23.(화)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s://hext.ubpi.or.kr>> (선착순 접수 아님)
※ **[신청서 작성요령, p.19] 반드시 읽어보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구비서류 ※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사본 1부(최근 연도 3개월, 직전 연도 3개월)
<예시 : 2025년 6~8월 발급 시 2024년 6~8월 분도 함께 제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최근 2개년도)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 자동차업종 : 사내협력사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임대계약서 등) 사본 1부
 - 자동차 부품 공급 관련 증빙서류(물품공급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사본 1부
※ 1~4차 벤더 업체를 증명할 수 있는 협약 및 계약서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추가 제출.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가점(인증지정,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참고 3】추천대상업체 평가항목 참조**
-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직수출실적 기준, 해당업체에 한함) 사본 1부
 -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처리절차 : 은행상담 및 신청(업체) ⇒ 접수(온라인) ⇒ 용자추천 결정 및 통보(진흥원)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 ※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상담 후 (용자신청서 및 대출상담확인서 확인) 온라인 신청

9. 기타사항

- 기업체 임직원 외 업무대행 금지(용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용자추천 결정: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항목**【참고 3】**에 의한 **평점이 높은 업체순 추천**
- 대출취급은행 : 12개 금융기관(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 대출취급기한 : 지원승인일(용자추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 **추천 후 미대출금액이 추천금액의 30%이상 시 1년간 용자추천 제한**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울산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됨
- 육성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함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http://www.ubpi.or.kr>) : ☎ 052-283 - 7221 ~ 7222

【참고 1】

지식서비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 소매업(주류, 담배소매업 제외)

60 방송업

612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참고 1-1】

제조업

- 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이면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이면서,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 기업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인 제조업종 기업
- 다.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기업
- 라. 무허가 건물 등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전업률 30%이상)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장 등록을 전제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

【참고 2】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용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 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철골 및 관련 구조물공사업(4213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42492),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424)은 지원 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 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 ~ 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참고 3]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추천업체 평가항목

1. 평 점 (100점)

① 매출액 : 매출액이 영세한 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매출액 (20점)	제조업	10억 미만	20점
		20억 미만	16점
		50억 미만	12점
		100억 미만	8점
		100억 이상	4점
	비제조업	5억 미만	20점
		10억 미만	16점
		30억 미만	12점
		50억 미만	8점
		50억 이상	4점

② 업 력 : 업력이 오래된 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업 력 (10점)	15년 이상	10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10년 이상	8점	
	5년 이상	6점	
	3년 이상	4점	
	3년 미만	2점	

③ 자금사용 횟수 : 자금수혜 신규 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2002. 7. 1이후 경영안정(육성)자금 수혜 횟수 (10점)	0(신규)~2회	10점	
	3~5회	5점	
	6회이상 수혜 또는 최근3년 이내 1회이상 실패	-5점	

④ 경쟁력 및 기술성 : 기술개발 및 기술관련 인프라 보유 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경쟁력 및 기술성 (10점)	특허권(국내/해외), 신기술, 신제품, 우수조달	10점	인증기간 내 증서
	벤처, 뿌리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8점	인증기간 내 증서
	실용신안, 기업부설연구소	6점	증서 또는 확인증
	☎, KT, ISO, QS9000인증, ANSI, BSI 등 한국·외국 규격 인증	4점	인증서 또는 확인증 제출

※ 항목별 최우선 항목만 적용(항목별 중복합산 점수 산정 불가)

⑤ 재무 건전성 :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부채비율 (10점)	평균부채비율 이하	10점	※ 제조업 용자제한 부채비율표 (중기부소관 정책자금지원 적용기준 준용) ※ 신규기업은 최하점
	평균부채비율과 제한부채비율평균값의 평균값 이하	7점	
	평균부채비율과 제한부채비율평균값의 평균값 초과	5점	

⑥ 매출액 증가율 : 기업 성장성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점) (당기증가율-전기 증가율)/전기증가 율×100	매출액 증가율 50% 이상	20점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신규기업은 최하점)
	매출액 증가율 30%~50% 미만	16점	
	매출액 증가율 20%~30% 미만	12점	
	매출액 증가율 10%~20% 미만	8점	
	매출액 증가율 10% 미만	4점	

⑦ 고용증가율 : 전년동기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근무인원 기준

항 목		점수	비 고	
인력증감율 (20점) (최근년도3개월평균인원 -전년동기3개월평균인원)/전년동기3개월평균인 원×100	[원천징수이행상 황신고서 확인] 기준 전년대비 신규고용 증가율	30%이상	20점	※ [최근 2개년도 원천 징수 이행상황 신고 서 확인] 제출 ※ 신규기업은 최하점
		10%이상~30%미만	16점	
		5%이상~10%미만	12점	
		1%초과~5%미만	8점	
		1%이하(유지/감소)	4점	

2. 가 점 (최대 10점)

① 수 상

항 목	점수	비 고
대통령상	4점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법인 및 대표자명의로 한함)
국무총리상, 장관상, 광역자치단체장상	3점	
기초자치단체장상	2점	

② 우 대

항 목	점수	비 고
가족친화기업	3점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확인
장애인기업		대표자 장애인증명서 확인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증(한국여성경제인협회)
창업보육시설 입주업체		본사가 보육입주 기관 내 소재
일자리창출우수강소기업		일자리창출우수강소기업 인증서
타 시·도 전입기업		법인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증
모범장수기업		모범장수기업 인증서(울산시)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		사업재편 승인증서(산업부)
청년기업		청년기업인증서 또는 대표자주민등록증

※ 청년기업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기업, 공동대표 허용

③ 사회공헌도

항 목	점수	비 고
메세나 운동 참여 불우이웃 돕기, 기부 등	3점	매출액의 0.2 % 초과
	2점	매출액의 0.2 % 이하
	1점	매출액의 0.1 % 이하

[참고 4]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온라인 접수 시 작성내용)

※아래 화면은 예시화면으로 본 접수시 화면구성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단계 > 1단계 용자정보 2단계 신청정보

신청종인 공고명 : 울산광역시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제조업

용자조건 및 한도

• 지원대상을 선택하여 용자조건 및 한도를 확인하세요

지원구분 : 운영자금

용자기간 : 1년거치 일시상환

용자비율(용도) : 직전년도 매출액의 25% 이하

지원(용자)한도 : 500,000,000 (기업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구입, 인건비, 세급과공과, 제품생산, 시장 개척 등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신청정보

담당자명 : 홍길동

담당자 연락처 : 010 - 1234 - 5678

직책 : 차장

담당자이메일 : test@ulsan.co.kr

우대기업확인 : 선택중이요

상시고용인원 : 10 명 ※최근 원청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근로소득 신고 인원

매출액 : 2,500,000,000 원 ※최근 재무제표 매출액 기입

자금용도 : 신규 기존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차출 기타

지원 신청액

		운영자금
용자한도액		500,000,000 원
신청금액	<input type="text"/>	500,000,000 원

은행정보

취급은행 : 경남은행

취급은행 지점명 : 울산

대출취급금액 : 500,000,000 원

담보 제공방법 : 부동산

상환일자 : 2025-05-28

은행담당자명 : 이경남

은행 연락처 : 052 - 123 - 4567

직책 : 입장

신청중인 공고명 : 2024년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체 정보 입력

사업자번호	436-88-02262		
사업체명	위드시스템테스트		
대표자명	테스트		
생년월일	<input type="text" value="931015"/>		
설립일자	2025-05-21		
법인번호	<input type="text" value="111111"/>	-	<input type="text" value="2222222"/>
과세유형	<input type="text" value="일반과세자"/>		
휴대전화	<input type="text" value="010"/>	-	<input type="text" value="1234"/> - <input type="text" value="1234"/>
대표전화	<input type="text" value="052"/>	-	<input type="text" value="4321"/> - <input type="text" value="4321"/>
팩스번호	<input type="text" value="052"/>	-	<input type="text" value="1234"/> - <input type="text" value="1234"/>
이메일	<input type="text" value="tech@humane.co.kr"/>		
산업분류번호	<input type="text" value="402001"/>	주의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명세 신고 업종코드 기입
업종	<input type="text" value="업종입니다"/>		ex)제조업,도소매,서비스업
업태	<input type="text"/>		ex)제조
종목	<input type="text" value="등록"/>		ex)자동차부품
주소	<input type="text" value="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와룡로 100, 123123 (송원동2가, 송원시영아파트)"/>		검색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 전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업종/조선업종은 지원사업명이 별도로 구분(이 외는 일반으로 신청)되어 있으니 해당 업종 공고를 클릭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3. 종업원수는 최근 월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수 또는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확인상 근로소득(간이세액) 근로자 수 기준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금용도는 신규 대출 신청은 [신규]에 체크, 기존 대출 대환 및 기존 시자금 연장(6개월 미만)의 경우는 [기존]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출희망은행은 융자신청금액을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 및 지점명, 담보조건, 상담일자, 담당자 정보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은행 협의내용은 대출할 은행과 협의한 사항 중 대출가능 여부를, 보증기관 협의내용은 신용보증가능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매출액은 최근 결산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상호·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원부상의 사업자등록일과 같도록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포괄양수양도의 경우)한 업체는 개인기업의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업종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중 비중이 높은 것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첨부파일 중 필수로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록하셔야 다음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미지파일 또는 한글, PDF 파일 형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문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센터(☎052-283-7221~2)